

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 
교 통 위 원 회

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 -

#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2025. 11.

교 통 실

#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 □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
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

## □ 운영개요

- 운영방식 : 민간위탁 (시설형)
- 위탁기간 : '23. 4. 1. ~ '26. 3. 31.(3년)
- 수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 교통회관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
  - 운수종사자 교육 및 시민 대상 교통문화 계도·창달 사업
  -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·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
  -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·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운영 관리 등
  - 교통문화교육원 시설·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
 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□ 운영체계

- 조직체계 : 1원장, 1실장, 3부(교육부, 복지부, 관리부)
- 인력구성 : 16명(정규직 12명, 계약직 4명)      ※ 정원 : 정규직 15명
- 운영요일 : 공휴일(설날, 추석) 및 일요일(1주, 3주)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
  - 운영시간 : 평일 06시 ~ 22시, 토·일·공휴일 09 ~ 18시

근무형태		월~금요일	토, 일요일, 공휴일
정규직(12명)		근무	원칙 휴무, 순번제로 접수처 지원
계약직	헬스코치(2명)	근무	1명 휴일근로(토/공휴일)
	접수처(2명)	근무	1명 휴일근로(토/일/공휴일)

## □ 시설현황

### ○ 설립근거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항(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설립운영)
-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센터 건립 추진('97.6.25., 시장방침 제551호)

### ○ 준 공 일 : '00.11.5.(개원일 : '01.3.15.)

- 건립기간 : 1997. ~ 2000.11. / 총사업비 : 11,070,177천원

### ○ 명 청 :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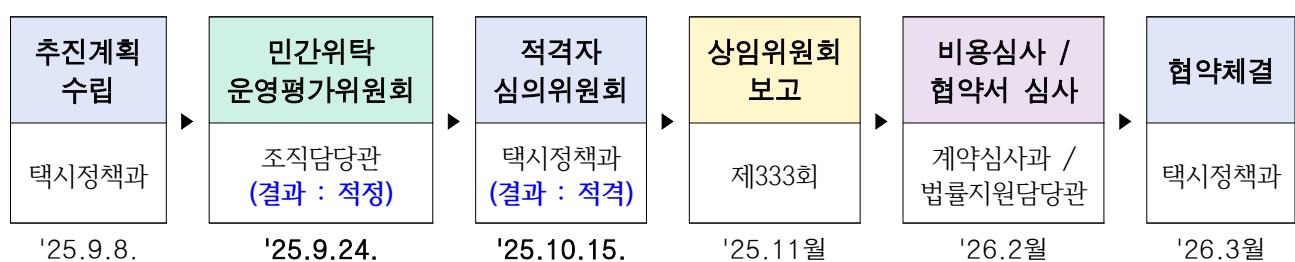
### ○ 위 치 :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-10(남현동)

### ○ 규 모 : 대지 1,650.1㎡, 건물 5,222.67㎡ (지하 1층~지상 5층)

구 분	시설명(면적)	구 분	시설명(면적)
B1층	• 남사우나(367㎡), 여사우나(220㎡), 주차장(326㎡), 기계실(359㎡)	3층	• 대강당(247㎡), 소강당(173㎡)
1층	• 헬스클럽(300㎡), 경비실(32㎡), 주차장(419㎡)	4층	• 사무실(173㎡), 탁구장(96㎡), 세미나실(55㎡), 행정실(16㎡) 등
2층	• 운수종사자복지쉼터(154㎡), 식당 및 예약실(433㎡)	5층	• 스포츠실(188㎡), 운수종사자 당구장(152㎡)

## □ 재계약 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'26.4.1. ~ '29.3.31.(3년)
- 수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 교통회관
- 선정방법 : 재계약 적정성 판단(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)
- 추진절차 및 일정



## □ 재계약 사유

### ○ 사전 심의기준 충족

- ('25.9.15.)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'79.12점'
- ('25.9.24.)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'적정'
- ('25.10.15.)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'적격'

### ○ 운수종사자 교육경험이 다수 축적되어 전문적·안정적 운영 가능

- 수탁기관(교통회관)은 '교통연수원' 운영을 통해 1983년부터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축적된 경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
- 본 위탁사무(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)에 대하여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적정 운영중으로 현 사무에 관하여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

### ○ 사업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지속적 확대

-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과 안전한 교육·복지시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바, 성과의 연속성 및 확대를 위해 재계약 필요

## □ 향후일정

-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(계약심사과, 법률지원담당관) : '26. 2월
- 위·수탁 재계약 협약 체결 : '26. 3월